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2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3. 25.

제출자 : 달성군의회



1. 제안이유

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제1항, 「민법」 제75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6. 2. 27. ~ 3. 19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시설사용허가의 취소)</p> <p>① (생 략) 1. ~ 6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</p> <p><u>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</u></p> <p><u>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</u></p> <p><u>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</u></p> <p><u>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</u></p> <p><u>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0조(시설사용허가의 취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